

인천광역시 중구청 구내식당 식자재 구매 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인천광역시 중구청 구내식당에 필요한 식자재를 납품하기 위한 계약이므로 인천광역시 중구청(구매자)과 제공업체(제공자) 간의 계약기간에 식자재 단가계약에 의거 신속하게 납품하기 위하여 “구매자”와 “제공자”가 수행할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 ① 본 계약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제1항에 의거, 2026년 7월 1일자로 계약상대자가 변경되어 영종구로 승계되는 계약으로, 분구 추진과 관련하여 과업물량 변경 등으로 인한 변경계약(계약금액 조정 포함)이 이루어질 수 있다.

제2조(계약기간) 본 계약은 2026년 7월 1일 부터 ~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관리업무) “구매자”는 “제공자”에게 식자재 납품을 의뢰하고 “제공자”는 의뢰받은 식자재를 계약기간동안 계속해서 납품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일일식자재는 반드시 **오전 8시 30분 이전까지** 지정된 장소로 납품해야 함)

제4조(품목 및 수량) “구매자”가 “제공자”에게 의뢰하는 종류별 품목은 별첨 내역서와 같으며, 납품기한 및 물량은 인천광역시 중구청 구내식당 영양사가 의뢰하는 바에 의한다.

제5조(계약단가) 식자재의 종류별 상세품목에 대한 계약단가는 협의된 내역서와 같다. (단, 계약단가와 시세단가의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품목에 한하여 제조사 후 쌍방 합의하에 단가조정을 할 수 있다.)

제6조(일일식자재 납품방법) “제공자”는 “구매자”의 식자재를 납품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중구청 구내식당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납품시에는 반드시 영양사의 수량 확인 및 규격 및 제품 상태를 검수 받고 납품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인수 및 납품) “제공자”는 “구매자”가 지정하는 장소[인천광역시 중구청 제2청 구내식당(하늘중앙로 201, 10층)]에 납품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제공자”는 영양사의 확인을 받고 지정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제8조(대금청구 및 지급) 납품대금은 단가계약 내역서의 품목별 단가에 의해 실제 제공된 물품을 기준으로 매월 말 정산하고, “구매자”는 검토하여 이상이 없을 시에 월말정산을 청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9조(일일식자재의 단가) 식자재를 납품하는 물량에 대하여 “제공자”의 귀책사유로 영양사가 불합격 판정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 납품을 인정하지 않는다.

제10조(단가계약 이외의 품목) 식당 운영상 내역서에 없는 식자재 품목을 대체 납품할 수 있으며, 해당 품목의 연간 평균단가에 낙찰률(낙찰률=투찰금액/기초금액*100)을 적용하여 납품가격을 결정한다.

제11조(하청 및 담보금지) “제공자”은 본 계약에 관한 어떠한 사항도 “구매자”의 서면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하청, 권리 및 의무양도 등을 할 수 없으며, 본 계약에 관한 일체를 담보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해지 및 해제) “구매자”는 “제공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의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서상의 계약 기간 내에 “제공자”가 업무수행을 거부하거나 또는 완료하지 못한 때
2. “제공자”의 귀책사유로 계약 기간 내에 납품완료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구매자”가 판단할 경우
3. 기타 “제공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조건을 위배하여 계약목적 달성을 수 없다고 “구매자”가 판단할 경우
4. “구매자”의 부득이한 사유로 본 사업의 필요성이 없어졌을 경우 (식당운영 종료 등)

제13조(비밀보장 및 보안조치) “제공자”는 이 구매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내용을 상호 승인 없이 공개 또는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보안상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계약내용의 해석) 당 계약서상의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르며 계약에 관한 해석에 대해 “구매자”와 “제공자”의 견해가 일치하지 않을 시에는 “구매자”의 해석이 우선한다.

제15조(긴급을 요하는 자재) 구내식당 운영 특성상 긴급을 요하는 자재는 “구매자”가 “제공자”에게 긴급자재 납품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공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시간을 지체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구매자”에게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할 경우 “구매자”는 “제공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